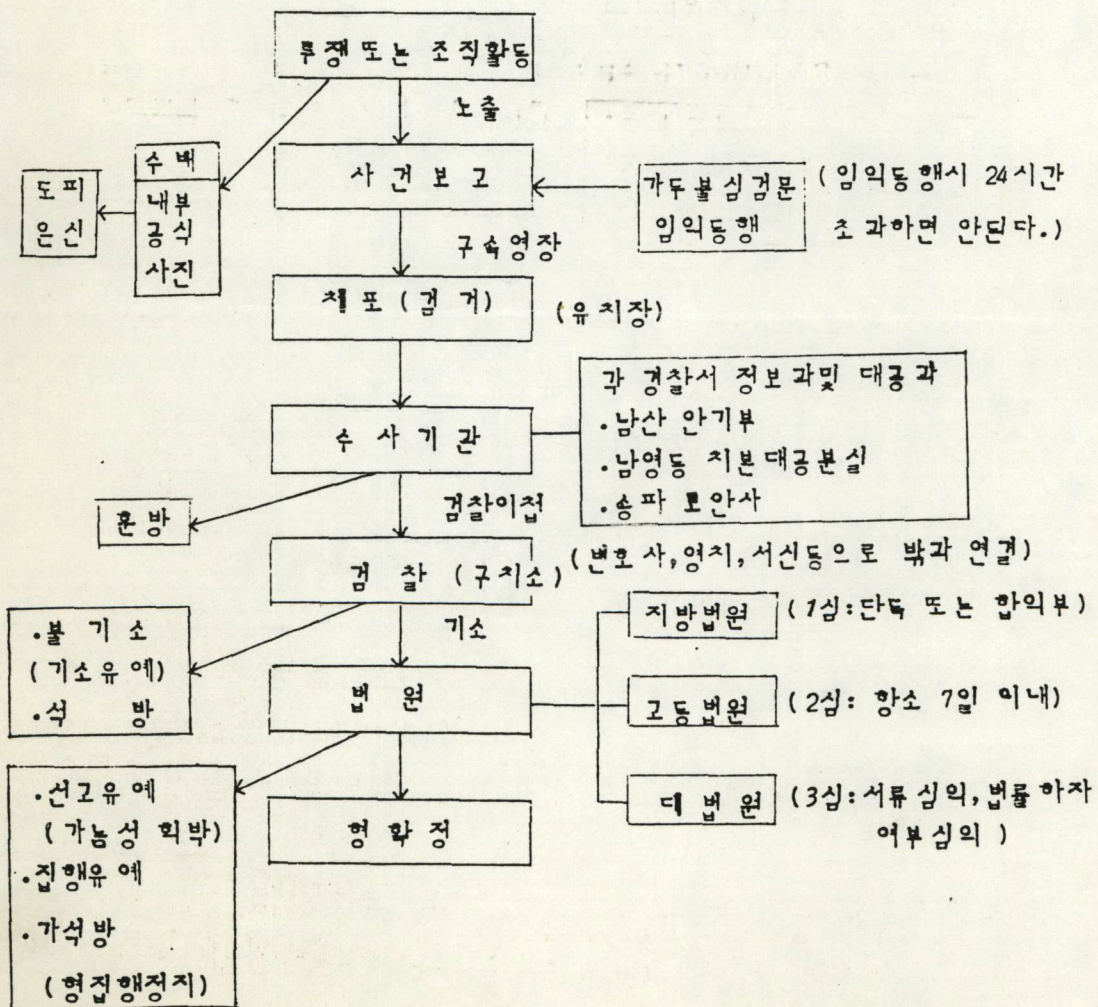


부록II. 실무활동 지침

1. 인권활동

1) 인권활동 지침 개요



2) 알아 두어야 할 법률상 권리

	법률조항	내 용	주 의 점
수 색	형사소송법 제 114조	피의자 혹은 피고인 성명, 직명, 압수할 물건, 수색장소, 신체, 물건, 발부년월일, 유효기간, 유효기간 경과시 집행을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.	- 영장을 받으면 기재사항 확인 후 전문 복사 - 입회인은 압수물건, 수색장소를 주시 - 현장 사진 촬영 - 물품을 수령서에 자세히 쓸 것
	형사소송법 제 125조	- 재판장 또는 법관 서명 날인 - 일출전, 일몰후 수색 불가능	
불 심 검 문	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1항	수항한 거동이나 주변의 합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행인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.	
	3 항	해당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서의 동행이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	
체 포	형사소송법 제 75조	구속영장에 의한 구속	
	제 211조	현행범 체포	
	제 206조	긴급 구속	
	제 207조	지방법원판사가 있는 시,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탁지역은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함.	
	제 200조	자기의 지에 반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물 해서는 안 된다.	
참고인			- 출도가 요구되어도 거절할 수 있다. -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

			를 맡은것으로 인하여 위 증직으로 되지 않는다. · 경찰, 검찰청에 출두하더라도 언제라도 자유롭게 퇴 거 할 수 있다.
목 비권	형사소송법 제 200 조	· 체포되거나 참고인으로서 호출을 받을때 조사 과정에서 말하고 싶 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다.	· 목비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: 수사가 고문, 폭력, 위협을 수반하여 진술과 자백을 강 요하는 경우 피의자가 목비방침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실수하거나 유도심문에 말려들어가는 경 우
구속기간	형사소송법 제 202 조	· 경찰에 체포된후 검사에게 인치 되어 구치소로 송치되거나 석방 되어야 한다.	· 최대구속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. 이기간에 기소 되 든지 석방되든지 한다. 이 시기에 최선을 다해 싸울 필요가 있다.
	제 203 조	· 검사가 인치한후 10일이내에 공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.	
	제 205 조	· 단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때 10일 을 연장할 수 있다.	
기 소		· 기소가 되면검사는 신속히 공소 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.	· 면회,편지가 가능하다. · 변호인과 협의한다.
고문을 받 지 않을 권 리			· 본인이 자백한 자술서가 있 는 경우도 법정에서 부인하 면 증거 능력이 없음. · 검찰 심문조서는 지문날인 만 찍으면 거의 대부분 증 거로 채택

3) 석방운동

- (1) 탄압, 체포 및 경과, 즉 사건·익권진상(기본적인 성격을) 분명히 한다.
- (2) 사건·진상을 많은 사람에게 확산시킨다.
- (3) 사건·진상을 확산 시키는 과정에서 행동을 조직한다.
 - ㄱ. 석방을 요구하는 상대, 대상을 확실히
 - ㄴ. 항의 집회, 서명운동
- (4) 가족, 본인 소속 단체, 인권단체(NCC 인권위,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,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, 신민당, 민주협)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.

2. 인쇄·편집활동

1) 신문 제작법

- (1) 기획 :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.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료수집과 연구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.

ㄱ. 면규정

- 보도 기사 : 대중의 이해에 기초해서 새롭게 문제를 제시해 나가는 폭로 기사
- 해설 : 진실한 보도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일반문제의 관련을 명확히 한다.
- 평론 : 지도적인 행동 지침을 준다.
- 연재기획, 수기, 서평, 가십, 칼럼 등이 있다.

- ㄴ. 기사분류 : 편집회의에서 상황평가를 통해 기사의 내용들을 설정한다.

각 내용의 비중에 따라 면의 성격을 고려하여 1차 레이아웃을 통해 원고의 매수를 정하고 매수에 맞춰서 원고를 작성한다.

(2) 기사쓰는 법 :

- ㄱ. 가능한 짧게 쓴다.
- ㄴ. 쉬운 문장으로 쓴다.
- ㄷ. 구체적으로 쓴다.